



미국의 금융규제 개혁 추진 현황

이아름 연구원

■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규제법인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¹⁾이 발효된 지 4년 이 경과하였으나 세부 규정이 완성되지 못하여 시행이 지연되고 있음.

● 미국의 규제감독당국은 법안 내용 변경 및 법정 소송 패소 등으로 세부 시행 법령을 아직 완성하지 못한 상태인데, 특히 위임받은 규정이 많은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제정 완성한 규정은 전체의 44%에 불과함.²⁾

■ 도드-프랭크법의 주요 내용은 감독시스템 개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소비자·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하는 총 16개³⁾의 장(title)으로 구성되었으며, 동 법은 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의 금융개혁법임.

●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위해 연방준비위원회(FRB: Federal Reserve Boar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통화감독청(OCC: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⁴⁾ 등 14개 금융감독기관이 참여하는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⁵⁾가 신설되고, 보험산업 감독을 위해 재무부 내에 연방보험국(FIO:

1) 2009년 12월 2일 민주당 프랭크 하원의원이 「2009 월가개혁 및 소비자보호법(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9)」을 발의하였으며, 2009년 12월 11일 하원을 통과함. 이후, 민주당 상원위원인 크리스토퍼 도드가 수정안인 「미국 금융안정성 회복법안(Restoring American Financial Stability Act of 2010)」을 제시하였고, 2010년 5월 20일 상원을 통과함. 이후 상하원 합동위원회(joint conference committee)에서 「도드-프랭크 월가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으로 통합되었고, 2010년 6월 29일과 7월 15일 각각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후 7월 21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 발효됨.

2) 법무법인 데이비스포크&하드웰(2014).

3) 금융감독체제의 개편(1장), 강제청산절차(2장), 보험규제의 개혁(5장), 은행규제의 개혁(6장), 장외파생상품거래 및 지급청산결제절차의 개혁(7장, 8장), 증권규제의 개혁(9장), 금융소비자보호(10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법은 제정 즉시 효력이 발효되거나 상당수 규정들은 6개월에서 2년 또는 5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음.

4) 통화감독청은 대형은행, 저축기관, 미국에 있는 외국은행의 지점을 감독함.

5) FSOC는 주 또는 연방 금융규제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전반적인 금융규제 및 개혁 동향을 조사하는 등 미국 경제의 시스템리스크와 경제 상황을 모니터링, 조정, 감독함.

Federal Insurance Office)⁶⁾이 설치되는 등 금융감독 체계가 개편됨.

- SIFI에 대한 규제·감독 가운데 대표적인 볼커룰⁷⁾에 따르면 은행 및 은행계열사는 고객 업무와 무관한 증권, 파생상품 등에 대한 자기계정거래(proprietary trading), 그리고 사모펀드(PEF)나 헤지펀드 투자가 금지됨.
- 소비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이 신설되고⁸⁾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⁹⁾가 마련됨.

■ 도드-프랭크법은 3,500쪽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기관들이 세부 규정을 제정하는데 어려움이 큼.

- 볼커룰, 개인펀드 규제, 청산 및 결제 기준 설정,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거래 관련 자문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은 제정되었음.
 - 반면, SEC가 아직 제정하지 못한 규정은 자산유동화증권(ABS)¹⁰⁾에 대한 규제, 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 강화, 신용평가회사들에 대한 규제 강화, 금융회사의 경영진 보수 공시 개선 등 금융 위기를 초래한 핵심 문제들을 포함함.

-
- 6) 연방보험국은 보험산업에 대한 조사연구,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망 구축 방안과 연방정부의 보험정책을 개발하는 기능을 수행함.
 - 7) 볼커룰은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들의 고위험 거래 억제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적자금 지원 등과 같은 정부의 개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입안됨. 2013년 12월 미국 감독당국의 승인 및 2014년 1월 미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 2014년 4월 발효되었으며 2017년부터 이를 전면 시행하기로 확정함.
 - 8)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정 제정,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을 담당함.
 - 9) 장외파생상품은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을 받게 되었으며, 금융회사가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backed securities) 등 증권화 상품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규모의 5% 이상 보유해야 함.
 - 10) 자산유동화증권은 모기지대출, 카드대출, 자동차담보대출, 학자금대출 등의 기초자산을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증권화한 것임.

〈표 1〉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도드-프랭크법 세부 규정 제정 진행과정

구분	도드-프랭크법 세부 규정 제정 진행과정			
	불커를	개인펀드 규제	청산 및 결제	지자체 자문
완성된 법안	은행 및 은행계열사의 자기계정거래 금지	운용규모 1억 달러 이상의 헤지펀드와 1.5억 달러 이상의 사모펀드는 SEC에 투자자문사로 등록해야 함	청산 및 결제 활동에 관한 포괄적인 기준을 설정함	지방채권 발행과 거래 관련 자문업무를 강화함
진행 중인 법안	자산유동화증권	파생상품	신용평가회사	기업지배구조
	유동화 대상 자산에 대해 건전성 평가	상품거래법 및 증권거래법에서 스왑관련 규정을 정의함	신용평가회사들이 채권 신용등급을 관대하게 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채권 발행 시 SEC가 신용평가사를 무작위로 지정할 수 있음	모든 금융회사는 경영진의 보상체계, 보수수준 등을 공시해야 함

자료: Wall Street Journal.

■ 한편, 일부 제정된 도드-프랭크법 세부 규정도 소송 및 업계의 반발 등으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공화당은 도드-프랭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고 있음.

- 불커를은 2012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금융산업의 정치권에 대한 로비로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금융기관이 자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 가운데 일부를 보유하도록 하는 규정도 부동산업계의 로비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향후 발급되는 모기지 대부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 한편, 잭 헨슬링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공화당)은 규제당국이 일부 비은행 금융회사를 SIFI로 지정하면서 오히려 이들이 재정위기 때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는 ‘대마불사(too big to fail)’ 금융회사가 되었다고 지적함.

(WSJ, 한국금융연구원 등)